

# 인도네시아 유제품 수출 현지조사보고

## 1. 對인니 수입바이어와의 거래계약서 작성

### ○ 국가 간 거래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

- 계약 당사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및 서명권자에 대한 확인
  - 계약서의 언어 : 일반 적으로는 영어 사용을 추천
  - 법률의 선택과 법원의 선택
  - 서명 방법 : 한국외의 국가에서는 친필 서명을 원칙으로 하며, 전자 서명이나 도장 등으로 대신 하지 못함.
  - 계약 장소와 날짜 명시
  - 이 외에는 일반적인 계약 기준을 따르면 됨.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합의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, 물건에 대한 정보·납품 방식·기간·결제 방식·계약 위반 및 과기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함.
- \*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직 통용되는 기준 계약서라는 개념이 없음.

## 2. 유제품 對인니 수출요건

### ○ 인도네시아 유제품시장 현황

-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유제품으로 국내제품 ±1,822개, 수입제품 ±869개가 있음. (2015년 6월 11일 기준)
- 현재,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평균 우유 소비량은 하루 1인당 3.6ml 또는 4.9그램 (우유분말형태)으로 매우 낮음.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유제품은 연유제품으로 전체 소비량의 6.4%를 차지함.

### ○ 유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요건

- 인도네시아로 유제품 수출 시, 제품시험 테스트와 인수공통감염병(예: 구제역), 검역서비스시스템, 식품안전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정부 측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여야 함.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한 사업체로 HACCP 및 할랄 인증을 받은 상태여야 함.

\* 참고사항:

1) 기술적인 요건

- a. 브루셀라증, 결핵과 같은 질병으로 무해한 축산에서 생산된 원료이어야 하며,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.
- b. 최소한 인도네시아국가표준(SNI)에 따라 미생물 및 찌꺼기 오염에 대한 시험테스트를 거쳐야 하며,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.
- c. 미생물균 검사에서 음성반응을 보여야 하며,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.
- d.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방부제 및 중독성 약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,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.
- e. 우유 및 유제품의 전 생산과정에 대해 HACCP 및 할랄인증 획득해야 함.

2) 수출업자의 요건

- 우유 및 유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회사 및 법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.
  - a. 법인설립허가증(SIUP) 사본
  - b. 법인납세번호(NPWP) 사본
  - c. 사업자등록증(STDP) 사본
  - d. 일반업자수입인증번호(APIU) 사본
  - e. 회사 대표의 신분증 사본
  - f. 회사 정관 사본 및 변경사항
  - g. 축산, 검역, 수의과, 국민건강 분야 지방정부기관의 추천서 사본
  - h. 축산물이력번호(NKV) 사본
  - I. 건강안전 증명서 사본
  - j. 원산지 증명서 사본
  - k. 검사분석결과 증명서 사본
  - l. 할랄인증서 사본
  - m. 청구서 사본
  - n. 작성한 현황문서 (이전에 수출경험이 있는 경우)

\* 출처: 인도네시아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식홈페이지  
([www.kesmavet.ditjennak.pertanian.go.id](http://www.kesmavet.ditjennak.pertanian.go.id))

○ 유제품 분류 관련

- 관련규정으로는 식료품 분류에 대한 인도네시아 식약청 청장령 2015년 제1호 (Peratur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5 Tentang Kategori Pangan)가 있음.

\* 식료품 분류

01.0: 카테고리 02.0(동식물 지방 또는 기름을 포함하는 제품)에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 유제품

01.1: 우유 및 우유를 원료로 한 음료

01.2: 발효 우유 및 Hidrolisa Enzim Renin 공정 유제품 (카테고리 01.1.2에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)

01.3: 연유 및 이와 유사한 것

01.4: 생크림 및 동종제품

01.5: 우유분말가루, 생크림분말가루 및 이와 유사한 것

01.6: 치즈 및 이와 유사한 것

01.7: 우유를 원료로 한 디저트 식품 (예, 푸딩, 요거트, 과일첨가 요거트)

01.8: 유장\* 및 유장 제품 (유장 치즈 제외)

\*유장: 젓 성분에서 단백질과 지방 성분을 빼고 남은 맑은 액체

(이하 생략)

- 유제품으로는 우유, 생크림, 버터밀크, 치즈, 유장 등이 있으며, 유제품은 젓소, 물소, 말, 염소, 양 등 가축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원료로 함.
- 일반적인 유제품 분류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

제품	유지방 함량(%)	탈지유 총 밀도(%)	기타
일반 우유	3% 초과	8% 초과	
무지방 우유/탈지우유	1.25% 미만		단백질 함량 2.7% 미만
저지방 우유	1.25~3% 미만		단백질 함량 2.7% 초과
합성착향료 성분을 함유한 우유	2% 초과	12% 초과	
우유성분을 함유한 음료	0.3% 초과		
요거트	3% 초과	8% 초과	젓산 0.9% 초과
저지방 요거트	1.25~3% 미만	8% 초과	젓산 0.9% 초과
무지방 요거트	1.25% 초과	8% 초과	젓산 0.9% 초과
연유	8% 초과		
크리머 음료(非우유)-액상형태	3.25% 초과	8.25% 미만	
크리머 음료(非우유)-분말형태	26% 초과		액상함량 5% 미만
휘핑크림	35% 초과		

- 기본적으로 유제품 여부는 HS코드(수입코드)에 따라 상품의 주성분을 기준으로 분류함.
- 우유 함유량이 5% 이하인 경우 유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며, 무알콜 음료 카테고리(우유맛 음료)로 분류됨.

\* 출처: Peratur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5 Tentang Kategori Pangan  
인도네시아 식약청 공식홈페이지 (www.pom.go.id)  
<http://foodreview.co.id/preview.php?view2&id=5668917#.VhNCdivDE-Z>